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 시설의 경우에도 사용기간 갱신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자에게는 적절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운영자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 조제3항 신설)

아무쪼록 이번에 정비된 일부개정조례안이 한강공원 이용시설 운영자와 시민들의 권익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